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2011. 6. 1. 제정
2015. 6. 17. 개정
2016. 6. 9. 개정
2020. 9. 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高麗法學』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할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2. 10인 내외의 편집위원

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구업적과 대외적 활동 및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법학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6. 17.>

제3조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본조신설 2016. 6. 9.>

제4조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고려법학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고려법학의 편집

4. 연구윤리지침의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과 제재조치

5. 기타 고려법학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② 편집위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 법학연구원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위임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전자메일 등에 의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2020. 9. 1.>

제6조 (규정 등 제정) ① 게재 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게재 논문의 취소 등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성, 제2조)

부 칙 <2020.9.1.>

이 규칙은 2020년 2월 4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